



환경업무정보

환경부고시 제2003-187호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증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옥시단트를 측정하는 대기연속자동측정기의 대체 성능시험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흡광차분광법을 대기공정시험방법에 새로이 추가하기 위함.

*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03-204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부과율 ◆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30원으로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4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동화농공·지방산업단지 폐수종밀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 원주동화농공·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

1. 공동처리구역

○ 구분: 원주동화농공·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일원

- 면적: 738.645m²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원주시 공단추진기획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5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동화농공·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
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열람장소: 강원도 원주시 공단추진기획단

(033-741-2681)

나. 열람기간: 30일이상

환경부고시 제2003-205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및 제2항의 규
정에의거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1800m³/일 (1단계: 900m³/일, 2단계 :
900m³/일)

- 설치면적: 8,136m²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2004년 ~ 2006년

- 사업지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3,3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190,650천원 / 년

마. 예상원인자 범위

- 원주 동화농공·지방사업 공동처리구역내의 사
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시켜 추리하는 업체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지방산업단지(국고 100%), 농공
단지(국고30%, 원인자 70%)

* 오·폐수 발생비율에 따라 시설설치비 배분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2003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 낙동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물사용량 1
톤당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10원으로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20원으로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고시한다.

환경부고시 제2003-208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5
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업무정보

◆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물사용량 1톤 당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30 원으로 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140원으로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고시한다.

환경부령 제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6 호)되어 제작후 일정기간이 지난 운행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등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차 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휘발유 등 자동차연료의

납함류량 등 연료제조기준을 정함(안 별표 20 가목5) 신설 및 별표 30).

나. 현행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사실상 경유승용차의 제작 및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여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별표 20 나목5) 신설).

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수수료는 당해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수수료의 지나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92조의7 및 별표 27의2).

라. 제작후 일정기간이 지난 운행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별표 27의5 신설).

마.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지정사업자가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별표 33 제2호바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약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5. 12. 6. 2) 결과, 특

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

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9건

*고시내용의 자세한 문의는 연합회((02)852-2229
1) 문의하세요

대통령령 제18154호

2003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산림법상의 임도중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임도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사업중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함(영 별표 1 제1호타목(2) 및 파목(2) 신설).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증개정령 ◆

1. 제안이유

환경 등에 관한 영향평가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평가서초안의 공람시 시·군·구의 인터넷에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였던 임도 등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 등에 관한 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시 시·군·구의 인터넷에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개최하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선함(영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항 신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으로 새로이 영향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18157호

200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증개정령 ◆

환경업무정보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3. 5. 29, 법률 제6913호)되어 환경신기술의 표시방법과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기술평가방법에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신기술로 지정받거나 환경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나.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신기술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신설).

다.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회(02)852-2291 ☎

2004년 연합회 주요사업

“환경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 전개

- 본지 2페이지 참조 -